

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8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7.

우정욱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01. 03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01. 14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우정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고성군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아동빈곤”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5호
 - 예고기간: 2024. 12. 27.(금) ~ 2025. 1. 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◦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◦ 빈곤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
- 사업 추진(안 제5조)

◦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,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)

◦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음.
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◦ 빈곤아동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. 14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